# <sup>누페산</sup> 통 닭 원

# [온고지신 통닭원]

#### 정 보 공 개 서

[민푸드]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016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02.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14.

#### 민푸드

####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20, 3층 302호(당수동, 당수프라자)

대표번호 Tel: 1588-7448 | 가맹사업부 Tel: 031-438-5900 | Fax: 031-419-5987

tongdakwon@naver.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http://franchise.ftc.go.kr)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 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 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온고지신 통닭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20, 3층 302호(당수				동, 당수프라자)	
пπ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푸드	개인사업자	2017.09.21	Ç	안현찬	1588-7448		031-419-5987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	록번호	70	02-16-00636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	구 당진로 20, 3층 302	호(당수동, 당수프라자)			
대표이사	안현찬/민푸드	온고지신 통닭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안현찬	031-419-5987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온고지신 통닭원	
상 호	온고지신 통닭원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sup>수 과 간</sup> 통 닭 원	출원번호 : 제40-2023-0185739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2,088	39,986	72,102	1,421,885	48,878	48,659
2022년	136,190	79,484	56,706	1,446,477	51,760	50,103
2023년	111,312	50,110	61,202	1,322,541	47,785	46,496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된 한 번 역 구	이듬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안현찬	2017.09.~현재	민푸드 대표	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저	임원:	<b>수</b> (명)	되임스/대〉	
시점	상근	비상근	<b>직원수</b> (명)	
2023년 12월 31일	1	-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온고지신 통닭원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23.10.16	출원번호: 제 40-2023-0185739 호	안현찬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6월 1일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온고지신 통닭元	안현찬	2018.06 ~ 2023.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20, 3층 302호 (당수동, 당수프라자)
민푸드	온고지신 통닭원	안현찬	2023.10 ~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20, 3층 302호 (당수동, 당수프라자)

영업표지 이름을 <온고지신 통닭元> 에서 <온고지신 통닭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 『온고지신 통닭원』 업종

영업표지	업	
온고지신 통닭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온고지신 통닭원	치킨	닭고기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온고지신 통닭원』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	23	-	21	21	-	20	20	-
서울	2	2	-	2	2	-	2	2	_
부산	-	-	-	-	-	-	-	-	_
대구	-	-	-	-	-	-	-	-	-
인천	10	10	-	9	9	-	8	8	-
 광주	-	-	-	-	-	-	-	-	_
대전	-	-	-	-	-	-	-	-	_
 울산	-	-	-	-	-	-	-	-	_
세종	-	-	-	-	-	-	-	-	_
경기	11	11	-	10	10	-	10	10	-
강원	-	-	-	-	-	-	-	-	_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최근 3년간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 수

▶ 당사의 최근 3년간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6	-	1	2	2	23
2022	23	-	-	2	1	21
2023	21	-	-	1	2	20

# 6. 『온고지신 통닭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온고지신 통닭원] 외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шп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미	배출액(상한)	연간 평균 미	배출액(하한)	비고
~14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20	186,608	16,887	298,444	29,640	72,989	6,082	20곳 산출
서울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_							
대구	_							
인천	8	212,657	18,695	298,444	29,640	127,256	10,604	8곳 산출
광주	-							
대전	_							
울산	_							
세종	_							
경기	10	167,478	14,953	274,606	27,239	72,989	6,082	10곳 산출
강원	-							
충북	_							
충남	-							
전북	-							
전남	_							
경북	-							
경남	-							

제주	_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온고지신 통닭원』]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1,978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온고지신 통닭원] 홍보를 위하여 2023년에 지출한 비용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F 합계	단위: 천원, 부기 가맹본부	ㅏ세 미포함) 가맹점	비고
합계	-	-	-	-	-	-
광고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서수원 지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70-2	031-292-5394

- ▶ 귀하는 가맹금을 정보공개서 별첨에 첨부된 '가맹금예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KB국민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맹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후,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가맹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사용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인허가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합계	3,300	-	-	-	-
가맹비	2,2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	1,100	가맹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 비	3 일 이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하지 않음

#### 2) 계약이행보증금액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계	1,000	-	-	-
계약이행 보증금	1,000		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 상액 등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4,300	
 가맹비	2,200	
개점 전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33m²(10평) 기준)

				(	, , , , , <u> </u>	• • , . – ,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면적 3.3m2당 금액	반환조건	비고
합 계		24,200		2,42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9,900	인테리어 공사 개시 3일 전	990	공사 전 계약취소	-
간판	가맹본부 -	3,300	주문제작 3일 이전	330	제작 전 계약취소	-
 설비, 집기	70年十	9,900	물품공급 5일 이전	990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1,100	물품공급 5일 이전	11]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b>3.3 m²</b> 당		디자인 검토비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	 수 있음

- ▶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초도물품 내용은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 설비, 닥트, POS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맹희망자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상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특별 교육비	110 (부가세포함, 실비 제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 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 공하는 것이므로 교 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보수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 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 공하는 것이므로 교 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광고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비용 중 가맹 본부부담액 30%제외 금액 (단, 제품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 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가맹 본부부담 4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가맹본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광 고 활 동 이 취소된 경우	
판촉비	1)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본사부 담,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 2)개별판촉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판 촉 활 동 이 취소된 경우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 머지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 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15/월 (부가세별도)	협력업체			
지연이자	연 20%	가맹본부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물품 대 금, 계약서상의 의 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 ▶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

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위생 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피스티	□ Ol. 1500 7440
회계처리 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		필요시	문의: 1588-7448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 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혐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영업표지 사용비,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

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비의 지급은 해당 양수·양도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분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4,300	
가맹비	2,200	
개점 전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 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 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 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온고지신 통닭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3] 참조	[별첨3]에 기재된 상품 이외에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	상품 및 서비스 공급중단 또는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급받은 상품 및 제품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3	] 참조	변경시 통보(유무선, 이메일 등)	2024년 5월 기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한 법중 럽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고기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	온고지신 통닭원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대형마트, 백화점 등 특수상권 제외)	(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

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뜻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 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온고지신 통닭원』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 지 않습니다.

# <u>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u>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ul><li>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li><li>예→B, 아니오→⑧</li></ul>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8조 제2항)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판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 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로열티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로열티 금액을 축소하여 지급 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본사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 나 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2회 연속 지연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상 규정된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감독,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설비 및 기기 등에 대한 점검으로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위생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가맹계약서상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단위 광고 및/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 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이 본사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본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정해진 기일 내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각종 비용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위탁 경영하게 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사유	TIAC 조 TIO SL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세45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 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 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온고지신 통닭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닭고기를 메뉴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일수	
16:00~22:00	26일/월 이상 영업	문의 : 031-438-5900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rightarrow$ 청결도 확인 $\rightarrow$ 관리표 작성 $\rightarrow$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rightarrow$ 완료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위 사항은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성 격	부담비율		ㅂ다저+١	ш¬	
구 분	7 7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 30%	광고비 7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귀하		
	상품광고			에게 광고비 분담내역	내중매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광고	+	광고비 40%	광고비 60%	통지 → 통지받은 날로		
전체 행사	가맹점	32-1 107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분담)	  부터 15일 이내 완납 -		
	모집광고			광고 시행	(전국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0 = 11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판촉행사 개별행사				부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 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 감면조건이라도 최초가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10%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30%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최초가맹금의 50%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의 위탁경영 금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 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위약벌 규정은 당사 또는 귀하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 / 1. 영업개시이전의 · 부담 참조
가맹금 예치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기관에 예치	D-44(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교육 실시	- 출ㆍ퇴근 집체교육	D-38(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7~35(15일)	
지역홍보	- 지역판촉 행사 실시	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매장 오픈시 오픈지원(무상인력제공/2~3일)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비용 항목	비용 비율		사유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함)되는 여의 표함)되는 경우액 비지하거 경당 비리지하다 이미 지급한 지마는 우에는 등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옷 시조건계시키 증정, 소프미증 중 조함/글   가매저사연자에게 제시 _ 경역자도 ㅎ 가매	가맹점	문의 . 031-438-590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개점 전 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특별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출·퇴근 집체교육	필요 시	필수교육
보수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온고지신 통닭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일 5시간, 3일 교육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교육	개별 산정	[110] 실비제외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del>-</del>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1588-744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3. 판매상품 리스트]



▶ 본사와의 협의와 점포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첨 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 온고지신 통닭원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상호(영업표지	) 민푸드 (온고지신 통	닭원) *시	·업자번	호: 702-	16-00636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안 현 찬				
	주소(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당수동, 당수프라자)	당진로 20, 3층	302호 1	전화번호	031-438-5900
	1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						
좌						
가맹본부의 계좌	KB국민은행		계좌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귀하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시실을 가맹본부에 통 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 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첨 5.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젇	l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6.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자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